

[추경] 2026년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 모집공고

중동 전쟁으로 인한 농식품 수출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「[추경] 2026년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」의 참여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

2026년 4월 16일
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

1 모집내용

□ 신청자격

- 농식품 품목 1만 달러(누적, '25.1.1~'26.3.31*) 이상 수출한 중소·중견기업**
 - * 선적일(출항일) 기준으로 농·축산물(수산·임산 제외) 직·간접 수출실적을 인정하며,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를 기반으로 공사에서 자체 조회하여 지원 자격 등 확인
 - **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해당기업

※ 상호출자 제한기업은 참여 불가하며, 농협 및 농식품을 수출하는 그 소속회사(대규모기업 집단)에 해당하나 농협법에 따라 대기업 제한적용 예외), 지역농협, 품목농협은 참여 가능

- '26년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(신청·공모형) 기 선정업체 지원가능

- 타 수출 바우처 선정업체 신청 불가

- * KOTRA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, 농산업글로벌성장패키지(농어촌공사), 수산바우처(aT), 임산바우처(aT), 외식바우처(aT) 및 중복선정을 제한하는 기타 국가/지자체 사업

□ 지원규모 : ○○○개소 (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)

□ 지원내용 : 사업메뉴 23개(붙임3) 중 필요 메뉴를 배정 한도 내 자율 선택 사용 후 국고 지원 비율에 따라 정산

- ① 현지 수입 등록 및 검사지원(한시적 물류부담 완화 등), ② 수출보험, ③ 항만·공항 부대비용, ④ 긴급 무역현안 대응 메뉴에 50% 이상 사용 의무
- * 상기 의무 외 각 메뉴별 이용 한도는 제한 없음

□ 지원금액 : 업체당 12백만원(국고기준) 정액 배정

- * 자부담 비율 : 중소기업 10%, 중견기업 2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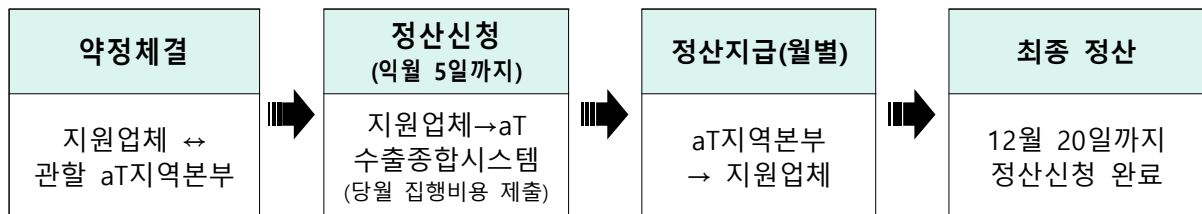
** 예산 여건 및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초 배정 이후 바우처 증액 또는 감액 가능

- 선정기준 : 중동(또는 중동 경유) 및 신선농산물 등 수출실적, 사업 계획의 충실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선정

구 분	정 의
중동 또는 중동 경유 수출실적	○ 중동 국가 수출실적 (25.1.1 ~ `26.3.31) 사우디아라비아, 아랍에미리트(UAE), 쿠웨이트, 카타르, 오만, 바레인, 이란, 이라크, 시리아, 레바논, 요르단, 팔레스타인, 이스라엘, 예멘
	○ 중동 경유 수출실적 (25.1.1 ~ `26.3.31) 중동 국가가 경유지로 명시된 선하증권(B/L)·항공화물운송장(AWB) 등 증빙 제출 의무
신선농산물 등 수출실적	○ 신선농산물 등 기준 품목(붙임 5) 수출실적 여부
사업 계획의 충실성	○ 사업 계획의 적정성, 구체성, 실천 가능성 등
'26년 본예산 지원 여부	○ 2026년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(신청형·공모형) 기 선정 여부

- 사업기간 : 약정 체결일로부터 '26. 12. 20 까지

* 단, 정산 인정기간 : '26.1.1. ~ '26.12.20 (기간 내 비용 집행 및 정산신청 완료)



2 신청절차

- 신청기간 : 공고일로부터 ~ '26. 4 30.(목) 16:00 까지

-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(aT수출종합지원시스템, <http://global.at.or.kr>)

○ 로그인* → 상단메뉴 [사업신청] → 참가기업 자가 역량진단 실시 → [추경] 2026년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 모집공고 내 [사업신청] 버튼 클릭(기본정보 입력, 신청서 작성 및 업로드)

* 신규 업체는 회원가입 필요

□ **결과발표** :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에서 확인(<http://global.at.or.kr>)

* 확인 방법 :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 로그인 → 마이 페이지 → 사업 신청관리

< 주요 일정 >

모집공고	신청마감	선정 및 배정	약정체결 및 사업개시
4.16(목)	26.4.30(목) 16:00	5월 초	5월 중순

* 상기 일정은 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**제출서류 목록**

※ 사업신청을 위해 로그인 한 계정에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와 동일한 경우만 유효

[필수 제출서류]

* '26년 패키지(신청형,공모형) 선정업체는 변동사항 없을시 ④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만 제출

- ①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
- ② 유사 사업 중복지원 불가 서약서
- ③ 사업자등록증명원(발급일로부터 1개월이내) * 신청서류 간소화 시스템(aT One-click) 활용 제출
- ④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1부
- ⑤ 온라인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(공인인증서 필요) ☞ <https://tmydata.or.kr> * 붙임 4 참고

*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를 기반으로 수출실적을 공사에서 자체 조회하여 지원자격 여부 등 확인

3 관할지사 및 문의처

관 할	연락처	관 할	연락처	관 할	연락처
서울경기	031-8060-6051 031-8060-6054	인 천	032-272-3007	강 원	033-920-1546 033-920-1548
세종충북	043-902-9525 043-902-9531	대전세종충남	042-389-5017 042-389-5019	전 북	063-904-5873 063-904-5874
광주전남	062-940-7013 062-940-7015	대구경북	053-218-4908 053-218-4913	부산울산	051-947-1083 051-947-1086
경 남	055-608-5804	제 주	064-748-9477 064-900-8657	본사	061-931-0861 061-931-0862 061-931-0863

붙임 1 **사업 신청 및 수행 관련 유의사항**

<신청제외 대상>

- 휴·폐업 기업
- 국세·지방세 체납 기업 (최종 약정 체결시 완납증명서 제출 필요)
- 정부, 공공기관, 금융기관의 제재로 인해 제재 대상인 자/기업
 - * 단, 제재기간 만료 및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
- 동일 법인의 복수 사업자는 동시 신청 및 선정 불가
-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(대기업)
- '25년도 패키지 참가업체 중 협약체결 후 참가기업의 사유로 협약 중도 해지 또는 '25년도 패키지 운영 미비 2회 이상 적발로 차년도 신청 1년 제한벌칙 확정 업체
-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사업 참가 제한 조치 업체 및 그 기업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업
- 중복선정 제한 사업에 선정된 업체
 - (aT 개별사업) 수출 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, 수산바우처, 임산바우처
 - (타 기관 수출바우처) KOTRA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, 농어촌공사(종자,사료) 기타 지자체 사업중 중복선정을 제한하는 사업

<중복지원 제한>

- 동일증빙 국고 또는 지방비를 중복 지원 불가 (위반시 환수 등 제재 조치)

<메뉴 사용 제한>

- 사업자 선정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으나, aT 개별 수출지원사업과 중복되는 내용 사용 제한이 필요한 메뉴
 - 글로벌 NEXT K-Food(스타트업) 선정업체는 패키지 메뉴(제품개발, 포장 디자인 개발, 샘플통관운송) 이용 불가

<배정액 잔액 발생>

- 배정액의 80% 미만 집행 시 차년도 사업참여 불가
 - '26년 패키지(신청형, 공모형) 선정업체의 경우, 추경 예산 우선 정산 원칙

붙임 2

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 사업메뉴

구분	사업메뉴	지원내용	
생산 · 수출 기반 (7)	① 수출컨설팅	수출역량 제고 및 수출확대를 위한 컨설팅(무역실무, 수출전략, 무역관세, 판로개척, ESG/META, PPWR 등)	
	② 수출전문인력 양성	무역실무, 제품개발, 상품화, 인허가 등 제품 생산부터 수출까지 전반에 걸친 임직원 수출역량강화 교육	
	③ 제품개발(기술도입)	레시피 개발, 신제품 개발, 기존 제품 개선, 제품 효능·성분 분석 등을 위한 외부기관 활용 용역	
	④ 해외인증등록	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(인증취득비·대행비)	
	⑤ 수출보험	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보험료, 수수료 지원 (환변동·단기수출보험, 해외채권 회수대행, 수출신용보증, 국외기업 신용조사)	
	⑥ 법무·세무·회계 자문	수출목적의 해외 진출용 법무·세무·회계 분야 전문 컨설팅(해외현지 분쟁 해결지원 등)	
	⑦ 통번역	수출목적의 기업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(전문 통번역업체를 통한 경우에 한함)	
수확후 관리 (4)	⑧ 선도유지제(장기저장제)	수출상품의 신선도 유지 및 장기 유통을 위한 파렛트커버, 이산화염소 스틱, 전처리제 등 외부위탁을 통한 제품 포장·용기 및 포장재 기능성 디자인 개선 및 개발(디자인, 동판 또는 금형제작) - 수출용 제품명 표기 또는 수출용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시각적 요소를 반영한 제품 포장·용기 디자인 개선 및 개발(국문만 있는 경우 정산 불가)	
	⑨ 포장디자인 개발		
	⑩ 수출공동브랜드	- 공동브랜드 적용(수출통합조직협의회, 인삼김치 캐릭터 등) 수출전용 포장상자, 포장자재 구입비 등 - 신선농산물 통합조직의 수출공동브랜드 개발, 디자인 비용	
	⑪ 프리미엄 수출품 선별	프리미엄 수출 상품의 공동 선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 비용	
운송 및 통관 (5)	⑫ 샘플통관운송	해외 바이어 대상 샘플발송에 소요되는 운송비, 통관비, 수출신고필증 발급비	
	⑬ 물류 효율화	수출용 파렛트 구입비(목재 재질의 경우, 열처리 방역 인증 또는 열처리 가공한 것에 한함) 등	
	⑭ 항만, 공항 부대비용	해상	항만 이용시 발생하는 비용(서류발급비, 항만 인근 저온저장시설 이용료, THC 등) 및 APC(선별장) 입고 이후 유통지원 관련 비용, CFS 작업비, CA컨테이너 할증료 등
		항공	공항 이용시 발생하는 비용(서류발급비, 공항 인근 저온저장시설 및 상용화주 터미널 이용료 등), APC(선별장) 입고 이후 유통지원 관련 비용 등
	⑮ 현지 수입 등록 및 검사 지원	수출국 현지 수입통관 규정에 맞는 제품등록비, 라벨링, 식품검사비용, PPWR 대응비용(시험평가, 샘플발송, 기술문서 작성대행) * 검사기계 등 기자재 구매는 지원 제외	
	⑯ 긴급 무역현안 대응	중동사태 등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무역현안 해소에 필요한 대응 비용 지원	
판로 개척 (7)	⑰ 글로벌홍보	- 자사제품 및 브랜드 해외홍보를 위한 외부위탁을 통한 유인물 디자인 개발 및 영상물 제작 - 자사제품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온·오프라인 소비자 대상 체험(시음·시식) 홍보 - 자사제품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각종 매체활용 홍보(메스미디어, 온라인물 홈페이지 등)	
	⑰ 현지시장 개척	- 바이어발굴 목적으로 추진하는 현지시장 유통소비실태조사 등의 해외 출장(항공료) - 수출국 현지바이어와의 세일즈 상담을 위한 제비용(항공료, 숙박료, 현지차량, 장소임차비, 통역비 등) - 해외진출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해외 바이어·소비자 대상 제품 선호도조사 등 실시	
	⑱ 개별식품박람회 참가	해외에서 개최되는 개별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비용(임차비, 장치비 등 부스 운영비, 전시품 운송통관 등)	
	⑳ 해외바이어 초청	- 해외 신규 거래선 확보를 위한 유력 농식품 바이어 초청 지원(항공료) - 현지 바이어 초청 및 생산현장 팸투어시 발생하는 관련 제비용(항공, 숙박료, 차량비, 통역비 등)	
	㉑ 판촉 및 신규 입점비 지원	- 해외 유통매장과 연계한 오프라인 판촉 행사(임차비, 장치비, 홍보비, 시식행사비) - 해외 온라인물과 연계한 판촉 행사(홍보비, 마케팅비, 입점수수료) - 수출국 유력 현지 대형유통매장 및 온라인물 신규 입점 및 등록비용 등	
	㉒ 수출상담회	- 웹 상품 카타로그 제작, 통역비, 장소임차비 등 - 현지 바이어 대상 수출상품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비용(장소임차, 행사기획, 통역, 전시 및 시식등)	
	㉓ 지사화 사업	수출국 현지시장개척 및 시장정착을 위한 제반비용(공유 오피스 임차, 마케팅 전문인력 고용비 등)	

* 부가가치세 지원 제외

* 판촉사업은 국내 수출업체에 지원(과거 국내공모 판촉 형태)

* 연도중 사업메뉴의 추가 및 변경 등 필요사항 발생시 "농식품 수출사업 심의위원회(사업)"에서 결정

붙임 3 **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 공통 정산기준**

1. 용어의 정의

- 「2026년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(이하 패키지)」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“총사업비”는 국고보조금과 자부담금의 합으로, 국고 대 자부담 구성 비율은 중소기업 9대 1, 중견기업 8대 2 로 한다.
 - “운영기관”은 패키지 참여기업의 평가와 선정, 약정체결, 점검, 예산 교부 및 집행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aT본사와 지역 본부를 말한다.
 - “참여기업”은 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aT지역본부와 협약 후, 패키지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를 말한다.
 - “사업메뉴”는 참여기업이 패키지 사업추진 완료 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항목을 말한다.
 - “수행기관”은 운영기관이 일정한 자격 등을 평가하여 선정 및 지정한 기관으로 참여기업에게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.
 - “전담기관”은 운영기관으로부터 특정 사업메뉴에 대해 수행기관의 선발과 관리 등의 서비스 총괄 관리를 위탁받은 각 기관을 말한다.
 - * 해외인증 등록(한국식품연구원), 수출보험(한국무역보험공사), 프리미엄 수출품 선별(통합조직)
 - “정산용역사”는 운영기관으로부터 참여기업의 정산신청 분에 대한 제출증빙 검증, 정산검토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.
 - “정산인정기간”은 참여기업과 aT가 작성한 사업약정서 상 명시된 협약기간을 말하며,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, 2026년 패키지 지원 사업의 기본 협약기간은 ‘26.1.1~’26.12.20로 한다.
- 본 정산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용어는 패키지 운영지침을 준용한다.

2. 예산집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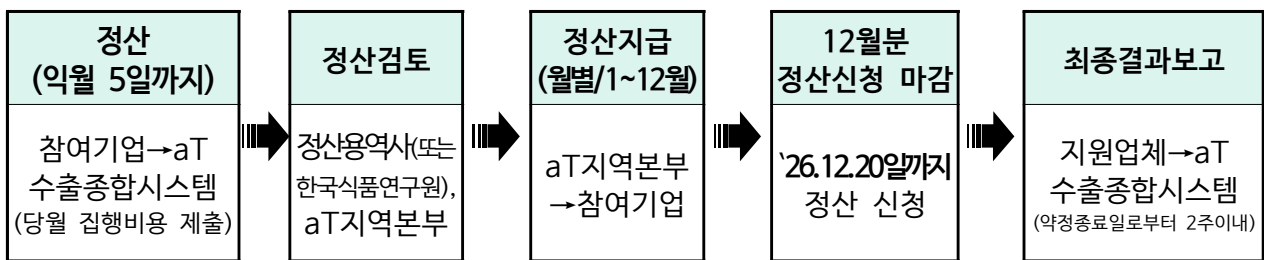
- 참여기업은 공동 및 사업메뉴별 정산기준에 따라 총사업비 기준으로 선 집행 후 사후정산을 요청하여야 하며, 선금 지급은 불가
 - 단, 수출보험 메뉴의 보험비용은 전담기관을 통해 자부담금만 집행
 - 정산신청 전 검토결과에 따라 정산승인 시 국고지원비율을 적용하여 정산집행액을 참여기업에 지급함
- 사업메뉴 단위 지원한도 및 별도 의무부여 현황

구분	내용
사업메뉴별 지원항목 및 한도	사업메뉴별 정산기준 참고 * 이용금액 또는 지원항목별 한도설정 ** [부록] 메뉴별 지원한도 일람표 참고
사업메뉴별 이용한도 제한	(신청형 공모형) 1) "현지 수입등록 검사지원 메뉴"의 한시적 물류부담 완화는 총 배정한도의 20~30% 제한 2) "긴급 무역현안 대응 메뉴"는 총 배정한도의 10% 제한 3) 2개 메뉴 집행한도 합산 최대 3억원 한도제한 (추경) 제한 없음 * 단, ① 현지 수입 등록 및 검사지원(한시적 물류부담 완화 등), ② 수출보험, ③ 항만·공항 부대비용, ④ 긴급 무역현안 대응 메뉴에 50% 이상 사용 의무
수출의무액 부여	① 해당 사업메뉴 : 판촉 및 신규 입점비 지원 ② 의무액 기준 : <u>총사업비 기준 정산신청액의 150% 이상 수출실적(㉔FOB기준 원화금액) 달성</u> 의무 부여 * 수출신고필증(수출이행 완료기준) 필수 제출
현지시장 개척, 해외바이어 초청 사업메뉴 지원항목 및 한도	① 참여기업당 사업메뉴 사용횟수 제한없음 ② 항공료 : 총사업비 기준 인정되는 집행액의 1/2에 국고지원비율을 적용하여 지원 ③ 1회당 최대인원 : 2인으로 제한 * 바이어초청의 경우, 1회당 최대 인원 제한은 없으나, 소속회사당 최대 2인 한도

3. 정산신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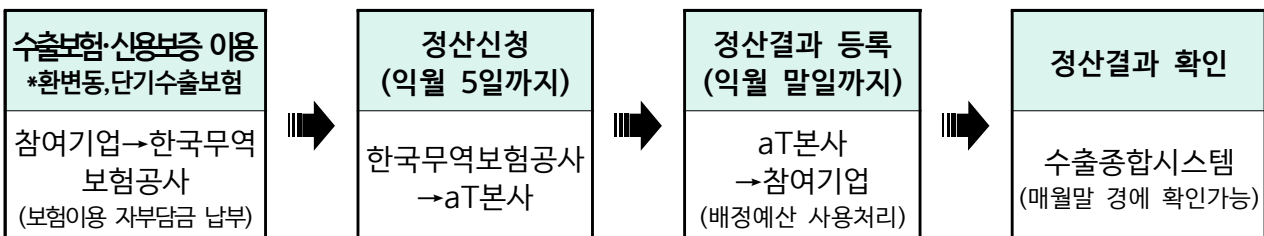
- (정산원칙) 참여기업은 정산 인정기간('26.1.1~'26.12.20) 이내에 선택한 사업메뉴의 추진시작 및 완료, 비용집행, 사업메뉴별 세부 정산기준에서 요구하는 적정 증빙서류를 갖추어 시스템에 정산신청을 완료해야 함
 - * 단, 해외인증등록은 예외적으로 인증서 발급일이 정산 인정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, 정산 인정기간 전 등록 추진을 시작하였다더라도 정산신청 가능
- (정산신청기한) 수시 정산신청이 가능하며, 메뉴 사용 완료한(계약 만료일, 비용결제일 등)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최초 정산신청을 완료해야 함
 - * 단, 정산 인정기간 마감일('26.12.20) 초과하여 정산신청 불가
- (정산거절) 운영기관(aT지역본부)에서는 참여기업이 정산 보완 요청에 불성실 이행하는 경우 정산을 거절할 수 있음
- (정산절차) 1차 정산용역사 및 2차 aT 지역본부 검토 후 정산승인 여부 결정 및 정산승인액 지급
 - 운영기관(aT지역본부) 및 정산용역사(또는 전담기관)는 참여기업이 제출한 정산 증빙자료에 대해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음
 - 매월 집행분에 대해 익월 5일까지 정산신청 시 동월 말일까지 정산결과 확정 및 정산승인액 지급 * 정산 증빙 미비로 인한 보완 진행 시에는 예외로 함

<일반메뉴, 해외인증 이용 시>



<수출보험 메뉴 내 보험/신용보증 이용 시>

* 수출보험 메뉴 내 단체보험/회수대행/신용조사 항목은 사업메뉴별 정산기준 별도참조



4. 비용 인정범위

- 비용 인정범위는 지원사업 목적에 직접 관련된 실 집행금액에 한함
- (공통 정산불가 항목) 아래 항목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정산 불가
 - 수출실적 분류 상 농식품 대상 집행비용만 인정 가능
 - ※ 비농식품은 혼적 구분하여 정산 불인정 혹은 감액 조치
 - 자산구매(유형·무형) 항목 불인정
 - * (자산성 항목으로 불인정하는 사례) 홈페이지 구축, 쇼핑몰 제작, 앱 개발, 기계류 구입 등
 - 부가가치세 등 제세금 정산 불가(단, 해외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세금 환급 또는 공제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정산가능)
 - 정산기준에 명시하지 아니한 인건비 및 제경비, 출장비
 - * (인건비) 참여기업의 대표자(또는 직원) 및 바이어에게 지급하는 급여수당 등 (출장비) 항공임 숙박비 등
 - 참여기업의 임직원, 직계존비속,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및 단체와 계약 또는 거래한 경우
 - 아래 정산신청 시 제출증빙으로 인정불가한 집행방식으로 거래한 경우
 - 정산기준 상 인정 가능성이 불명확한 비용의 집행은 관할 aT 지역본부 담당자의 사전 확인 및 승인 필요

5. 정산신청 시 제출증빙

- 정산신청 시 사업메뉴별 정산기준에서 요구하는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필수
- 정산 증빙서류는 국문 혹은 영문 표기 후 제출(증빙서류용 별도 번역비 지원 불가)
 - (기본 증빙유형) 정산신청서, 계약서, 세금계산서 또는 인보이스, 집행증빙 등
 - * 필요 시 결과물 실물 또는 결과물 제작 여부 확인가능한 전자파일 제출 포함
 - (정산 증빙자료 제출방법) 스캔 후 PDF 등의 전자문서로 시스템에 등록
 - ※ 수출신고필증은 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자료로 제출 원칙(필요 시 스캔본 제출 허용 가능)

- (인정가능한 집행방식) 계좌이체 및 카드결제
 - ※ 무통장입금 및 현금, 매출채권(어음, 외상 등) 집행은 인정 불가
 - ※ 계좌이체 시 법인명의 계좌 사용 원칙(참여기업 거래처 동일)
 - ※ 카드결제 시 법인명의 카드 사용이 원칙(개인카드 사용 후 비용처리 인정불가)
 - ※ 물건 등과의 각종 상계 방식으로 비용 집행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
 - ※ 세금계산서는 승인번호가 부여된 것, 국세청에서 유효한 세금계산서로 조회되는 것만 인정 가능
 - ※ 정산증빙으로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제공동의 필수
 - * [aT]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 → [참여기업]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 → [국세청] 전자세금계산서 수정(취소) 사실 발생 시 알림
 - ※ 간이 영수증은 불인정

6. 해외집행

- 송금을 통한 비용집행 시 법인명의 계좌로의 송금이 원칙
 - 외환거래 불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개인 계좌로 송금해야 하는 경우 관할 aT지역본부 담당자의 사전 승인 필요
- 환율 적용기준
 - 송금증 상 환율이 명시된 경우 해당 환율 적용
 - 외환계좌를 통한 입금으로 송금증 상 환율 확인이 어려운 경우, 송금일 기준 하나은행 '최초고시 송금 보낼 때' 환율 적용
 - * 하나은행 사이트 접속 → 환율 → 환율/외화예금 금리 → 현재환율 → 고시회차(최초) 선택 → 조회 → 송금 보낼 때 기준 환율 적용
 - 환율증빙 없는 경우, 행사기간 평균 하나은행 '최초고시 송금 보낼 때' 환율 적용
 - * 사업기간(행사시작일~행사종료일) 중 KEB하나은행 최초고시 송금 보내실 때 기간평균환율(단, 정산신청일은 협약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음)
 - * 하나은행 사이트 접속 → 환율 → 환율/외화예금 금리 → 평균환율(기간평균, 최초고시) 검색 → 조회 → 송금 보낼 때 기준 환율 적용

7. 사업추진을 위한 계약 시 주의사항

- 사업자등록증 미보유 업체, 사업장 미보유 등 단순한 개인(전문가, 프리랜서 등)과는 계약 불가
 - * 해외 업체와 거래한 경우, 현지 국가에서 법인임을 확인 가능한 공식 서류 제출
 - * 단, aT 제공 수출컨설팅 전문 수행기관 리스트에 포함된 전문위원(프리랜서)과는 계약 가능
- 참여기업의 임직원, 직계존비속,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및 단체와는 계약 불가

8. 중복지원 제한

-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정산받은 동일한 증빙으로 국고 또는 지방비를 중복 지원받을 수 없으며, 위반 확인 시 환수 등 제재 조치
 - 참여기업이 타 기관 및 지자체 등의 사업을 통해 비용을 일부라도 중복 지원받은 경우, 패키지 지원사업을 비롯한 타 지원사업에 동일 증빙으로 정산 신청하여 이중으로 지원받을 수 없음
 - 추후 이중 지원 등이 적발 될 시에는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사업 참여제한 및 보조금 환수, 수사기관 수사 의뢰 등의 불이익 발생 할 수 있음
- 동일 증빙으로 복수의 패키지 사업메뉴에서 중복 또는 분할하여 정산 불가
 - ※ 이 외의 중복제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공고 및 정산 기준 참조

9. 기타사항

-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 운영지침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」, 「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」, 「공공재정 부정청구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」 등 기타 관계 법령을 따름

붙임 4 무역통계제공 동의서 온라인 제출 방법

□ 무역통계제공 동의서 온라인 제출방법 * 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 필요

1. TmyDATA 플랫폼 접속

※ 일반접속: <https://tmydata.or.kr> ▶ 마이데이터 ▶ 데이터 전송하기 ▶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전략처 ▶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선택

※ 전용 URL: <https://tmydata.or.kr/mydata/send/index?t=1601&c=721&general=true>

2. 사업자 번호 입력 후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로 인증 ※회원가입 불필요

3. 필수 전송항목 체크

마이데이터

데이터 전송

- 데이터 전송하기
- 동의 변경하기
- 전송내역
- 동의내역

데이터 연결

MyTransQ

전송 항목선택

전송 기관선택
전송 항목선택
전송 동의
전송 완료

동의 내용

ⓘ 관세청 통계계산 제외물품은 증명서 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
동의목적	농식품 수출시장 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한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추진 목적	보유 및 이용기간	선택 동의일로부터 5년
자료조회 기간	2012-01-01 ~ 2030-01-31		
전송일자	선택 매월 <input type="radio"/> 1일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5일 <input type="radio"/> 15일 <input type="radio"/> 1일,15일 <input type="radio"/> 수시		
전송기간	2025-02-20 ~ 2030-01-31		
수출입구분	<input type="radio"/> 전체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수출 <input type="radio"/> 수입		
데이터기준	<input type="radio"/> 연월간 집계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신고건별		
조회기간 기준	<input type="radio"/> 수리일 <input type="radio"/> 신고일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출원일		
사업자 구분	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수출자 <input type="radio"/> 제조자 <input type="radio"/> 수출자+제조자		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필수 동의항목	기본동의 수출신고번호, 신고일자, 수리일자, 선적일자, 수출대행자상호, 수출대행자 사업자번호, 제조자상호, 제조자사업자등록번호, 목적 국가코드, 운송수단유형코드, 적재항구공명코드, 원산지증명서발급현정, AG코드명, HS10단위부호, 운송량, 신고이력가액, 신고 원화가액		
<input type="checkbox"/> 선택 동의항목	선택동의		

다음

4. 열람·이용 동의 및 전송요청

마이데이터

데이터 전송

- 데이터 전송하기
- 동의 변경하기
- 전송내역
- 동의내역

데이터 연결

MyTransQ

전송 동의

전송 기관선택
전송 항목선택
전송 동의
전송 완료

전송 동의서

전송기관	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전략사	동의목적	농식품 수출시장 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한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추진 목적
동의일자	2025-02-27	전송주기	정기 전송
전송일자	매월, 5일	전송기간	2025-02-20 ~ 2030-01-31
자료조회 기간	2012-01-01 ~ 2030-01-31	보유 및 이용기간	동의일로부터 5년
필수 동의항목	기본동의 수출신고번호, 신고일자, 수리일자, 선적일자, 수출대행자상호, 수출대행자 사업자번호, 제조자상호, 제조자사업자등록번호, 목적 국가코드, 운송수단유형코드, 적재항구공명코드, 원산지증명서발급현정, AG코드명, HS10단위부호, 운송량, 신고이력가액, 신고 원화가액		

[필수] 전송 및 열람·이용 동의 안내 내용보기

1. 수출입 신고정보는 본 동의서 제출을 통해 귀사가 열람·이용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2. 수출입 신고정보를 열람·이용하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정보주체가 전송기관으로의 정보 전송 및 열람·이용 동의 권한을 지정한 시점까지입니다.
3. 귀사가 전송기관으로 정보제공 동의한 내용에 대하여 언제든지 변경·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.(단, 1회 전송 및 전송한 내역의 경우 동의철회가 불가하며, 전송기관이 플랫폼 이용을 중지하는 경우 정기전송 동의내역은 착권 철회됩니다.)
4. 귀사는 본 정보 및 열람·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으며 업무 편의를 제공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

당사는 본 내용에 대한 본인 권리에 대해 이해하였으며, 위 자료의 전송 요청 및 전송기관이 열람·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전송하기

5.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

인증서 선택

저장매체를 선택하세요

사용할 인증서를 선택하세요

상태	구분	사용자	발급자	만료일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사업자(공동)			

인증서 비밀번호 (인증서 비밀번호는 대문자, 소문자, 숫자)

1. 수출입신고정보는 본 동의서 제출을 통해 귀사가 열람·이용을 동의한 전송기관에 관해 제공되며, 사후 언제든지 그 열람·이용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 2. 수출입 신고정보를 열람·이용하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정보주체가 전송기관의 정보 열람·이용 동의 권한을 지정한 시점 또는 동의를 철회하는 시점까지입니다. (단, 3회 전송의 경우 동의 철회 불가)
 3. 귀사는 본 정보 열람·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으며 업무편의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

당사는 본 내용에 대한 본인 권리에 대해 이해하였으며, 위 자료의 전송요청 및 전송기관이 열람·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6. 전송 완료

마이데이터

전송 완료

전송 기관선택 전송 항목선택 전송 동의 전송 완료

데이터 전송 완료

① 내역 확인은 "전송내역"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단 일부 내역의 경우 전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

붙임 5

신선농산물 등 인정 품목 및 HS코드

1 과실류

품 명	HS코드	품 명	HS코드
감귤	0805-21-1000	자두(신선)	0809-40-1000
만다린 (탄저린·세트수머 포함/신선·건조한 것)	0805-21-9000	키위푸르트(신선)	0810-50-0000
기타 (감귤류의 과실/신선·건조한 것)	0805-90-0000	단감(신선)	0810-70-1000
포도(신선)	0806-10-0000	매실(신선)	0810-90-5000
사과(신선)	0808-10-0000	그 밖의 과실(기타/신선한 것)	0810-90-9000
배(신선)	0808-30-0000	과실, 견과류 (냉동/초본류딸기, 나무딸기, 밤, 대추, 잣 등 이외 기타)	0811-90-9000
살구(신선)	0809-10-0000	감귤류의 껍질	0814-00-1000
복숭아(넥타린 포함/신선)	0809-30-0000		

2 화훼류

품 명	HS코드	품 명	HS코드
장미(접목 여부 불문)	0602-40-0000	카네이션(절화/신선)	0603-12-0000
난초(산식물)	0602-90-1010	심비디움(절화/신선)	0603-13-1000
국화	0602-90-1050	팔레놉시스(절화/신선)	0603-13-2000
선인장류(산식물)	0602-90-1060	기타 난류(절화/신선)	0603-13-9000
기타 화훼류	0602-90-1090	국화(절화/신선)	0603-14-0000
기타산식물	0602-90-9090	백합(릴리움종)	0603-15-0000
장미(절화/신선)	0603-11-0000	튤립(절화/신선)	0603-19-1000
		기타 절화(신선)	0603-19-9000

3 버섯류

품 명	HS코드	품 명	HS코드
버섯의 종균	0602-90-9040	기타버섯(신선/냉장)	0709-59-9000
양송이 버섯(신선·냉장한 것)	0709-51-7000	양송이 버섯(건조)	0712-31-1000
큰느타리버섯(신선, 냉장)	0709-59-4010	느타리버섯(건조)	0712-39-1040
기타 버섯(신선, 냉장)	0709-59-4090	팽이버섯(건조)	0712-39-1050
팽이버섯(신선/냉장)	0709-59-5000	기타버섯(건조)	0712-39-1090

4) 채소류

품 명	HS코드	품 명	HS코드
감자(종자용 이외 기타)	0701-90-0000	시금치류(신선 냉장)	0709-70-0000
방울토마토	0702-00-1000	호박류(큐러비종)(신선 또는 냉장)	0709-93-0000
토마토(기타 신선 냉장)	0702-00-9000	깻잎	0709-99-3000
양파(껍질을 벗긴 것)	0703-10-1010	기타의 채소의 기타 (신선 또는 냉장)	0709-99-9000
양파(기타)	0703-10-1090	채소류의 혼합물(냉동)	0710-90-0000
마늘(탈피한 것)	0703-20-1000	기타채소(일시저장처리)	0711-90-5099
마늘(기타)	0703-20-9000	무(건조)	0712-90-2020
대파	0703-90-2000	기타채소(건조)	0712-90-2099
쪽파	0703-90-3000	고구마(신선)	0714-20-1000
파속채소(기타양파쪽파마늘 이외)	0703-90-9000	서류(기타)	0714-90-9090
꽃양배추, 브로콜리(신선 냉장)	0704-10-0000	수박(신선)	0807-11-0000
양배추(신선 냉장)	0704-90-1000	참외	0807-19-1000
배추(신선 냉장)	0704-90-2000	멜론류 기타	0807-19-9000
결구상치(신선 냉장)	0705-11-0000	초본류 딸기(신선)	0810-10-0000
상치(결구상치 이외 기타)(신선 냉장)	0705-19-0000	초본류 딸기(냉동)	0811-10-0000
당근(신선 냉장)	0706-10-1000	양파종자	1209-91-1010
무(신선 냉장)	0706-90-1000	기타(파속종자)	1209-91-1090
고추냉이와 겨자무	0706-90-2000	무종자	1209-91-2000
오이류(신선 냉장)	0707-00-0000	고추·단고추 및 착색단고추류의 종자	1209-91-3000
콩(비그나 패세러스)(신선 냉장)	0708-20-0000	양배추 종자	1209-91-4000
아스파라거스(신선 냉장)	0709-20-0000	토마토 종자	1209-91-5000
가지(신선 냉장)	0709-30-0000	기타(채소종자)	1209-91-9000
단고추(벨터입제한한다)	0709-60-1000	파종용의 종자, 과실 포자(기타)	1209-99-9000
기타(고추류)	0709-60-9000	한약재(기타향료 의약품 등)	1211-90-9090

5) 김치류

품 명	HS코드	품 명	HS코드
채소, 채소 혼합물(기타)	2004-90-9000	김치(냉동하지 않은 것)	2005-99-1000

6 축산물

품 명	HS코드	품 명	HS코드
돼지(중돈)	0103-10-0000	돼지고기(냉동/기타/기타)	0203-29-9000
쇠고기 (신선,냉장/도체, 이분도체)	0201-10-0000	면양고기 (어린 면양/신선·냉장/도체와 이분도체)	0204-10-0000
쇠고기 (신선·냉장/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/갈비)	0201-20-1000	돼지고기(식용설육/간장/냉동)	0206-41-0000
쇠고기 (신선·냉장/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/기타)	0201-20-9000	돼지고기(식용설육/족/냉동)	0206-49-1000
쇠고기 (신선,냉장/뼈 없는 것)	0201-30-0000	돼지고기식용설육(기타/냉동)	0206-49-9000
쇠고기 (냉동/도체, 이분도체)	0202-10-0000	닭고기 (절단하지 않은 육 /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)	0207-11-0000
쇠고기 (냉동/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/갈비)	0202-20-1000	닭고기 (절단하지 않은 육) (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)	0207-12-0000
쇠고기 (냉동/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/기타)	0202-20-9000	닭고기(절단육)	0207-13-1000
쇠고기 (냉동/뼈 없는것)	0202-30-0000	닭간장(냉장)	0207-13-2010
돼지고기 (신선, 냉장/도체, 이분도체)	0203-11-0000	닭기타 설육(냉장)	0207-13-2090
돼지고기 (신선·냉장, 냉동/넓적다리살· 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/뼈가 있는 것)	0203-12-0000	닭다리(냉동)	0207-14-1010
돼지고기 (신선,냉장/기타/삼겹살)	0203-19-1000	닭가슴(냉동)	0207-14-1020
돼지고기 (신선,냉장/기타/기타)	0203-19-9000	닭날개(냉동)	0207-14-1030
돼지고기 (냉동/도체, 이분도체)	0203-21-0000	닭기타절단육(냉동)	0207-14-1090
돼지고기 (냉동/넓적다리, 어깨살 뼈채절단)	0203-22-0000	닭간장(냉동)	0207-14-2010
돼지고기(냉동/기타/삼겹살)	0203-29-1000	오리의 것 (신선·냉장/절단하지 않은 육)	0207-41-0000

품 명	HS코드	품 명	HS코드
오리 절단육 (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)	0207-44-1000	조란 (껍질 붙지 않은 것/건조한 것)	0408-91-0000
오리 간 (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)	0207-44-2010	조란기타	0408-99-9000
오리 기타 (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)	0207-44-2090	장(기타동물)	0504-00-1090
오리 절단육 (냉동한 것에 한한다)	0207-45-1000	닭고기(기타조제저장)	1602-32-9000
오리 간 (냉동한 것에 한한다)	0207-45-2010	돼지고기 (넓적다리살과 그 절단육/밀폐용기에 넣은 것)	1602-41-1000
오리 기타 (냉동한 것에 한한다)	0207-45-2090	돼지고기 (넓적다리살과 그 절단육/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)	1602-41-9000
살코기가 없는 돼지 비계 (기름을 빼지 않은 것/신선·냉장· 냉동·염장·염수장·건조·훈제한 것)	0209-10-0000	돼지고기 (어깨살과 그 절단육/밀폐용기에 넣은 것)	1602-42-1000
오리의 것 (냉동/절단하지 않은 육)	0207-42-0000	돼지고기 (어깨살과 그 절단육/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)	1602-42-9000
오리 지방간 (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)	0207-43-0000	돼지고기 (기타/혼합물 포함/밀폐용기에 넣은 것)	1602-49-1000
신선란(닭의 것)	0407-21-0000	돼지고기 (기타/혼합물 포함/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)	1602-49-9000
기타의 신선란(기타)	0407-90-0000		